

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65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, 일·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·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직원 복리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장공무원 규정 삭제(안 제8조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(17.4.25.)으로 출장공무원 규정(제4조의2) 신설로 법령 중복·재기재 사항으로 삭제함

나.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 시 의무적으로 승인 강화(안 제23조제1항)

- (현행) 공무원은 경조사가 있을 경우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⇒ (변경) 군수는 주어야 한다.

다. 육아시간 남녀공무원에게 부여(안 제23조제4항)

- (현행)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
⇒ (변경)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(부부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만 가능)

라. 자녀입영휴가 규정 신설(안 제23조제6항)

-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 그 날 1일 휴가 부여

마. 격무,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 신설(안 제23조제7항)

- 재해·재난 등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,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경우 등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 허가

바.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

3일 이상의 휴가 규정 신설함(안 제23조제8항) ※ 성별영향분석 결과 반영

사. 경조사별 특별휴가일수를 경남도내 지자체와 맞춤(안 별표 4)

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,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: (현행) 2일 ⇒ (변경) 3일

아. 장기재직휴가 사용일수에 대한 종전조례(조례 제2248호)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앴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4조의2, 제7조의3제1항·제2항·제7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그 밖에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5. 02.~5. 22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반영함(안 제23조제8항)

(6) 전국 개정현황: 격무, 주요 공적에 따른 특별휴가 규정

- 경남(밀양, 산청, 함양), 서울시, 경기도, 광역 지자체 대부분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23조제1항·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
-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.

제23조에 제6항·제7항·제8항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1.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
 2.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3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⑧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거창군 조례 제2248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(이하 "출장공무원"이라 한다)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,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.</u></p> <p><u>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전화,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2조(복장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증규칙」(총리령)을 준용한다.</p> 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<u>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<u>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삭 제></p> <p>제12조(복장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」 ----- -----</p> <p>제23조(특별휴가) ① <u>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부부 공무원인 경우 한 사람만 해당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그 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<u>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 data-bbox="172 853 767 936">부칙(조례 제2248호, 일부개정 '15.6.10.) <신 설></p>	<p data-bbox="826 293 1417 645"> <u>1. 재해·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</u> <u>2.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포상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</u> <u>3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</p> <p data-bbox="810 667 1417 801"> <u>⑧ 공무원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 청구 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u> </p> <p data-bbox="810 853 1417 1160"> 부칙(조례 제2248호, 일부개정 '15.6.10.) <u>제2조(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적용례)</u> <u>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본다.</u> </p>

[별표 4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3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 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5
입 양	본인	20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<u>3</u>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<u>3</u>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